

제 364 호

1973. 4.20.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양택외

편집 : 공보실장 김건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444·6090

시보

차 례

◎ 조	비		
제 764 호		서울특별시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3
제 765 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수용아 동강학급조례	5
◎ 규	칙		
제 1298 호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6
제 1299 호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회관칙	7
◎ 고	시		
건설부고시 제 9 호		지하고속철도제 1 호선 지적승인	
		일부변경 고시	8
제 51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지하고속철도시설)	
		실시계획일부변경고시	8
제 52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운동장시설)	
		실시계획인가	16
◎ 공	고		
제 73 호		환지처분 (역촌토지구획정리지구)	16
제 78 호		시임버스 운전원 모집공고	17
◎ 사	방		1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601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용언이 제정한 서울특별시 하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청 양택식

1973년 4월 19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64 호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제 58조의규정에의한 수익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부과대상자) ① 부담금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하천공사(이하 "공사"라한다)로 인하여천저하 이익을받는 토지부작물또는시설(이하 "토지등"이라한다)의 공사시행공고(이하 "공고"라한다)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하천의신설, 개축, 보수

2. 하천부작용의신설, 개축, 변경, 제거

② 천함의 경우에 부과당시의 소유자가 당해공사로 인하여 천저하 이익을받음이없이 당해토지등을 타인에게 이전한 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

과한다.

③ 제1항의경우에 부과당시의 소유자와 고승계인(공사준공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천저하 이익을 받을경우에는 당해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④ 제1항내지 천함의경우에 있어 천저하이익이라함은 공사준공일로부터 1년이되는날 까지에있어 토지등의 시가가 부과당시의 시가에 자진상승치를 합산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조 (부과액의 결정등) ① 부담금의 액은 천저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시정이 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당해공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공사비"라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천함의 경우에 수익자가 2인이상 인 때에는 당해 부과금액은 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이분 부과하다.

제4조 (토지등의 가액조사) ① 시정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본사를 시행하기전에 부과대상이 될 토지등의 가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부과서의 토지가액은 공사준공후 1년 2월 이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시기) 부담금은 건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당해 공사준공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시행공고) 시장은 공사시행시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2. 공사의 시행지
3. 공사의 착공 년월일
4. 공사의 준공 년월일
5. 공 사 비
6. 부과 구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또는 금전

으로 부담할때

2.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일때

제8조(납부통지) 시장은 부담금을 결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부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본말납부) 부담금이 다액이어서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수익자에게 대하여 연리 5분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기일로부터 3년할 넘지 아니하는 기일안에 본말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부담금의 납부통지서를 발송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강제징수) 부담금을 납부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 한다.

제12조(권한위임) 시장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의 일부또는 전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부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공사시행 공고된 공사 또는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하천 수익자 부담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현저한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하며 이 경우에 이조례의 시행일을 공사 공고일로 부터 보고 이 조례 시행일의 토지등의 소유자를 공사시행 공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 본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시설수용 아동장학금조례를 이에 공포하다.

서울특별시 시장 양덕식

1973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 765 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장학금조례

제 1 조 (목적) 이조례는 아동복지법 제 2 조에 규정된 보호소년으로서 재능이 뛰어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자격은 아동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중 사실이 견고하고 소령, 방정학 중,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우수한 성적으로 상급학교 (단상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합격하자로서 고성적순위가 실업성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주학생은 학업성적이 전년도 정원의 13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자

3. 전 2 항의 해당 자 이외 학교장이나 또는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 3 조 (장학생의 선정) 전 조에 규정된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과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의 추천서와 성적증명서, 공부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장학생의 선발) 전조의 규정
 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서류검사를 한후 시장이 선발한다.

제 5 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현장에게 지급한다.

제 6 조 (장학금의 지급금지) 장학생으
 로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한 때
2. 소행이 방정하지 못할 때
3. 탁월한 재능을 인정할 수 없을 때
4. 정계 처분을 받든 사실이 있을 때
5. 휴학하였을 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7 조 (장학생의 수) 장학생의 수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청 양 택 식
 1973.년 4월 19 일

◎서울특별시규칙 제 1298호

서울특별시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3조 제 2항중 "전항의"를
 "제 1항의"로 하여 제 4항으로 하
 며 "제 3항"을 "제 5항"으로 하
 고 동조제 제 2항과 제 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남기경과후 90일 이내에 채납된 오물수거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채납된 수수료의 100/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전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남기경과후 180일 이내에 채납된 오물수거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18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채납된 오물수거수수료의 100/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제1항 및 전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3년 4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립근로자 퇴직제도를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청 양덕식
1973년 4월 20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299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퇴직제

제1조 (처우) 서울특별시립근로자퇴직(이하 퇴직이라 한다)은 영세근로자에게 자활독립의 경제적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숙식 및 휴양시설을 제공하는 사무를 권장한다.

제2조 (권장) ① 퇴직에 권장은 두고 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퇴직운영에 관한 제반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 (공무원) 퇴직에 권장 이외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1970년 5월 20일자 서울특별시규칙제 923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립근로자합숙소 직제는 이 규칙 공포와 동시에 폐지한다.

고 시

◎ 건설부고시 제 9 호

지하고속철도제 1 호선
지적승인일부변경고시

1. 당사관내 지하고속철도 제 1 호선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 지하고속철도제 1 호선 '지적승인변경조서

일부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청 및 도시
계획국 도시계획과 지하철건설본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

1973. 4. 17.
건설부장관

구 분	종 별	목	연 장	변 경 구 간		비 고
				기 점	종 점	
변경후	서울지하 고속철도	18-22.0	710	동대문구 건동동 591	동대문구 건동동 602	총 9542.4 미터광 710 미터구간일부 변경
변경전	"	9.6-22.8	"	"	"	

별 첨 : 도면표시와 같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 51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
(지하고속철도시설)
실시계획일부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지하고속
철도시설)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지적서는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 및 지하철 건설

본부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
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3. 4. 17.
서울특별시청

1. 사업의 시행지 : 서울역 - 청량리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지하고속철도제 1 호선 시설
3. 사업의 착수 : 실시 계획변경일로 부
터 1 주일이내
준공 : 74.12.30.

4. 수용 및 사용할 토지 : 전몰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5. 변경인가내용										
구 분	종 별	특	연장	변 경 구 간		비 고				
				기	중					
				점	점					
변경후	서울지하고 속칭도	18-22	710	동대문 전농동 591	동대문 전농동 602	총 9,542.4 미터중 710미 터구간일부				
변경전		9.6- 22.8	"	"	"	변경				
별첨 도면포시와 같음.										
토 지 조 서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 유 자		권제한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동대문구 전농동	591-10	대	7.2	591-56	대	2.8		시유지	
		591-12	"	61.4	591-57	"	3.2	전농동 590-5	조병석	
		591-13	"	4.1	591-58	"	1.3	창신동 581-28	이형만	
		591-15	"	22.7	591-59	"	2.3	"	"	
		591-18	"	63.7	591-40	"	15.5	성암리동 172-4	박승환	산구신택 은행계당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충대문구 전농동	591-19	대	40.3	591-61	대	20.3	용두동 118-15	심인경	
	"	591-22	"	54.5	591-62	"	27.1	전농동 590-10	김육근	
	"	591-23	"	52.2	591-23	"	19.6	"	"	
	"	"	"	"	591-63	"	32.6	"	"	
	"	591-26	"	29.6	591-26	"	8.7	전농동 589-7	박진원	
	"	"	"	"	591-64	"	20.9	"	"	
	"	591-30	"	48.6	591-30	"	8.3	전농동 589-4	최농자 탁용득	국민은행 근저당
	"	"	"	"	591-65	"	40.3	"	"	
	"	591-45	"	38.2	591-45	"	38.2	전농동 286-2	김경남	
	"	591-48	"	25.2	591-48	"	25.2	전농동 589-9	권장홍	
	"	591-47	"	33.6	591-47	"	33.6	"	"	
	"	591-46	"	8.2	591-46	"	8.2	"	"	
	"	591-49	"	8	591-49	"	8	"	"	

순 위	소재지	분할건표시			분할후표시 (주용대상)			소 유 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동대문구 건농동	591-42	대	5.5	591-42	대	5.5	건농동 589-10	임동근	
	"	591-43	"	0.4	591-43	"	0.4	"	"	
	"	591-44	"	0.7	591-44	"	0.7	건농동 589-9	권창용	
	"	591-39	"	21.3	591-39	"	21.3	"	"	
	"	591-41	"	23.8	591-41	"	23.8	건농동 589-10	임동근	
	"	591-40	"	3.9	591-40	"	3.9	"	"	
	"	591-35	"	1	591-35	"	1	건농동 589-6	이건하	
	"	591-36	"	2.4	591-36	"	2.4	"	"	
	"	591-31	"	20.5	591-31	"	1.2	"	"	제일은행 근지방
	"				591-44	"	19.3	"	"	"
	"	591-34	"	45.4	591-34	"	0.5	"	"	"
	"				591-67	"	45.1	"	"	"
	"	591-55	"	8.1	591-55	"	8.1	건농동 589-12 침방리 농 203	김원환 김필문	

전 물 조 서					
번 호	소 재 지	건 물 구 조	평 수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동대문구 전농동 590-3 ₉	연와조 와즙	1층 14 ₉ 2층 9	전농동 590-8	김정숙
	" 590-7	복조 와즙	22.28	청량리동 172-6	박승환
	" 590-5	복조 초즙	9.20	전농동 590-6	송부성
	" 590-5	복조 와즙	41	" 591-57	조병석
	" 590-4	세멘부목조 세멘와즙	20.83	" 103-51	김태범
	" 589-10	복조 초즙	14.6	" 589-10	홍순덕
	"	"	12.5	"	"
	" 591-46 ₄₇	복조 와즙	15	" 589-9	권창홍
	" 591-39 ₄₄ 49	복조 세멘와즙	1층 15.83 2층 15.83	"	"
	" 589-4	복조 와즙	22	" 589-4	황진우
	" 591-26	복조 도단즙	1층 23 ₃ 2층 3	상봉동 453-38	박경원
	" 591-34, 35 36, 37	연와조 와즙	1층 12 2층 12	전농동 589-6	이전하
	" "	"	4.23	"	"
	" "	복조 와즙	33.15	"	"
	" 591-23	"	15	전농동 590-11	김육진
	" 591-22	"	28	"	"
	" 591-23	"	17	"	"
	" 591-45	복조 스테트즙	23	청량리동 203	한필문
	" 591-30	복조 와즙	20	전농동 591-40	황능자

토 지 조 서										
순 위	수 적 지	분할전토지		분할후토지 (부담부담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평가 액	비 고 기 타 비 고
		지번	지적	지번	지적					
1	동대문구 건암동	602-41대	10.00	602-66대	3.90	동대문구건암동 603	박경환			
2	"	602-42	15.20	602-67	7.90	" " 602-9	"			
3	"	602-43	13.00	602-68	9.00	경기양주군미곡면금곡리 419	박수명			
4	"	602-49	10.00	602-69	10.00	동대문구건암동 602-11	안길용			
5	"	602-45	13.10	602-45	13.10	경기양주군전접면내곡리 252	김성태			
6	"	602-46	13.00	602-46	13.00	중구도동 2가 92	이종석			
7	"	602-13	130.90	602-70	1.80	"	"			
8	"	602-17	16.90	602-47	16.90	동대문구청량리동 61-3 55 " 남십리동 38	권영일 이태훈	국민 은행	군지당권 4,500,000	
9	"	602-14	47.80	602-71	5.00	"	"			
10	"	602-48	21.20	602-48	21.20	동대문구회경동 285-8	현홍섭			
11	"	602-15	46.40	602-72	9.90	"	"			
12	"	602-49	1.30	602-49	1.30	동대문구건암동 602-16	이은숙			
13	"	602-16	16.10	602-73	4.30	"	"			
14	"	602-50	16.20	602-50	16.20	동대문구건암동 602-17	장용석			
15	"	602-17	46.40	602-74	16.00	"	"			
16	"	602-51	1.90	602-51	1.90	동대문구건암동 602-34	차승길 박계선			
17	"	602-84	16.30	602-75	4.30	"	"			
18	"	602-52	16.90	602-52	16.90	동대문구건암동 603-1	조경구			
19	"	602-18	44.70	602-76	21.70	"	"			
20	"	602-53	16.90	602-53	16.90	동대문구청량리동 61-346	유인환			
21	"	602-19	62.60	602-77	20.50	"	"			

순 위	소재지	분합전코스		부속 (후포시 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적 면적	지번	지적 면적	주 소	성 명	성명	관계인
22	동대문구 건농동	602-54대	0.80	602-51대	0.80	동대문구보문동 4가 86	이권옥		
23	"	602-55	18.00	602-51	18.00	"	"		
24	"	602-21	72.80	602-71	24.70	"	"		
25	"	602-20	3.30	602-81	1.30	"	"		
26	"	602-56	18.40	602-51	18.40	종로구권농동 44-2	이동진	국민 은행	근저당권 3,500,000
27	"	602-22	87.80	602-83	30.30	"	"		
28	"	602-57	1.10	602-51	1.10	"	"		
29	"	602-34	2.60	602-81	1.40	"	"		
30	"	602-64	70.40	602-61	70.40	중구을지로 1가 100	주식회사 미봉상사	대한 상업 공사	근저당권 31,62500
31	"	602-63	3.50	602-53	3.50	"	"		
32	"	602-65	7.10	602-65	7.10	"	"		
33	"	602-23	77.50	602-82	8.80	동대문구 상봉동 468-1	우성원 주식회사	조흥 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9,600,000
34	"	602-24	42.70	602-83	1.10	"	"		
35	"	602-59	14.10	602-59	14.10	동대문구 용두동 125-15	안원희		
36	"	602-28	12.40	602-25	12.40	"	"	사우 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8,000,000
37	"	602-25	57.90	602-73	3.20	"	"		
38	"	602-60	29.90	602-53	29.90	동대문구건농동 602-27	정규봉		
39	"	602-27	22.90	602-27	22.90	"	"		
40	"	602-28	15.10	602-23	15.10	동대문구건농동 598-2	윤옥인		
41	"	602-32	0.90	602-32	0.90	"	"	조흥 은행	근저당권 6,500,000
	계	41필지			51830				

건 물 조 서					
순위	소 제 지	건물구조	평 수	소 용 자	
				주 소	성 명
1	동대문구건물등 603 603-1	목 조 초 증	7.00 12.20	건물등 603	박경환
2	" 603-1	목 조 세 면 와 증	1층 27.00 2층 25.50	경기양주군미금면금서리 489	박수명
3	" 603-1	목 조 와 증	16.63	건물등 603-1	김경혁
4	" 602-13 602-45	목 조 세 면 와 증	13.50	중구도동 2가 12	이종석
	" "	세 면 부 록 조 증 세 면 와 증	1층 18.22 2층 6.72	"	이종석
5	" 602-14	목 조 와 증	31.28	동대문구청량리동 61-355 동대문구합정리동 38	권남일 이대훈
6	" 603-1	목 조 와 증	16.24 24.16	동대문구회경동 285-8	현용섭
	" "	세 면 부 록 조 증	2.08	"	"
7	" "	세 면 부 록 조 와 증	1층 9.84 2층 8.66	건물등 603-1	이은숙
8	" 602-17	목 조 와 증	21.55	" 602-17	장응석
9	" 602-34	목 조 와 증	19.00	" 602-34	차수경 박재현
10	" 603	목 조 초 증	23.00	" 603	조춘철
11	" 602	목 조 와 증	25.00	" 602	홍상표
12	" 601	목 조 도 단 증 목 조 초 증	10.00 10.00	동대문구보문동 4가 86	이길복
	" "	목 조 도 단 증	3.00	"	"
13	" 600-1	목 조 세 면 와 증	27.77	종로구권농동 44-2	이종길
	" "	목 조 스테트 증	6.15 7.50	"	"
14	" 598-3	목 조 와 증	19.53	동대문구용두동 125-15	안일석
15	" 602-27	철근콘크리트 벽	31.88	건물등 602-27	정국봉
16	" 598-3	목 조 와 증	21.31	건물등 598-2	윤복인

◎ 서울특별시고시 제 52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운동장시설)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운동장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와 행정안전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제 1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시행자 주장군에게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고 있습니다.

1973. 4. 19.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위치 : 영등포구 은수동 34 번지의 17 필지
-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시설조성사업)
명칭 : 운동장
- 3. 사업시행면적 : 38,837 평
- 4. 사업시행자주소 : 시내용 살구 후암동 244 - 111
성명 : 주장군

- 5. 사업의착수 : 인가후 1 주일이내 준공 : 1973. 10. 30.
- 6. 사용합토지 : 사업시행자소유 (소유권 및 권리명세) 생략
- 7. 인가내용 : 별첨 인가증 및 도면 표시와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 73 호

환 지 처 분
(역촌토지구획정리지구)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역촌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별첨 환지확정지정서 및 도면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되었기 동법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별첨 환지확정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제 1 과 및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973. 4. 17.

서울특별시장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73 호

시영버스 운전원 모집 공고
시민 교통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당 시에서는 시영버스 운전
원을 다음과 같이 널리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모집인원 : 0 0명
- 2. 응모자격 : (1) 제 1종 대형차
 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로서 2년이상 유경험
 자 (30세이상 50세미
 만인자)
 (2) 신원보증서 제출이 가능한자
- 3. 등록기간 : 1973.4.21-1973
 4. 30. (10일간)
- 4. 구비서류 : (1) 이력서 1부
 (2)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사진 (명함판) 2매
- 5.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
 면동동 378번지 자동
 차운수사업소 (전화 97-1678,
 96-3997)

- 6. 전형방법 : 간단한 면접과 실
 기에 의한.
- 7. 특 전 : 채용후 특히 성적
 이 우수한자는 특별조
 치가 있음.
- 8. 기 타 : 기타 상세한 사항
 은 위의 등록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73. 4. . .
 서울특별시

사 령

- ◎ 1973. 4. 18.
마포병원 (서대 지상간호기원 차임자
 윤병권과경)
남부병대 근무를 명함.
- ◎ 1973. 4. 19
서울특별시 상임위원 업세육
지방노동위원회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73. 4. 1. 자
 대 통 령
- ◎ 1973. 3. 20
서울시지방병무청 행정서기 김서리
서울특별시 진입을 경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